

# Supplier Declaration on Business Ethics

## 협력업체의 기업 윤리 선언

### Contents

---

I.	노동 및 인권 .....	4
A.	차별 정책 금지.....	4
B.	인도적 대우 .....	4
C.	비자발적 노동 및 인신 매매 방지.....	4
D.	아동 노동 금지.....	4
E.	미성년자 노동 방지 .....	5
F.	노동 시간 .....	5
G.	임금 및 복리 후생.....	5
H.	단체 결사의 자유 .....	5
I.	분쟁지역의 금속 구매 금지.....	5
II.	보건 및 안전 .....	6
A.	직업 안전 .....	6
B.	화학 약품 노출 방지 .....	6
C.	비상 방지, 대비, 및 대응 .....	6
D.	직업적 안전보건 절차 및 시스템 .....	6
E.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 .....	7
F.	기계 보호 장치.....	7
G.	위생, 음식, 및 편의 시설.....	7
H.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7
I.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위원회 .....	7
III.	환경 영향 .....	8
A.	유해 물질 관리 및 규제 .....	8
B.	고형 폐기 관리.....	8
C.	폐수 및 폭풍우 관리 .....	8
D.	대기 배출 관리.....	8
E.	환경 허가 및 리포트 .....	8
F.	오염 방지 및 자원 절약 .....	8
G.	제품 구성 물질 규제 .....	8



IV.	윤리 .....	9
A.	청렴한 비즈니스 관행 .....	9
B.	뇌물 .....	9
C.	자본 시장 준수 : 내부자 거래 .....	9
D.	인력 유인 금지 .....	9
E.	정보 공개 .....	10
F.	내부 고발자 보호 및 익명 고발 .....	10
G.	지역 사회 활동 참여 .....	10
H.	지적 재산권 보호 .....	10
I.	사적 자유 보호 .....	10
J.	보복 행위 방지 .....	10
V.	관리 시스템 준수 .....	11
A.	회사 정책 .....	11
B.	매니지먼트 법적 책임 및 책임 .....	11
C.	리스크 평가 및 관리 .....	11
D.	실행 계획 및 조치 목적 수행 .....	11
E.	감사 및 평가 .....	11
F.	문서화 및 기록 .....	11
G.	교육 훈련 .....	11
H.	커뮤니케이션 .....	11
I.	근로자 피드백 및 참여 .....	12
J.	개선책 프로세스 .....	12
K.	협력 업체 책임감 .....	12
VI.	기타 .....	13
A.	협력 업체 방문 .....	13
B.	행동 수칙 위반 책임 .....	13
C.	외주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	13
D.	유효기간 .....	13
E.	수정 및 추가 .....	13
F.	분리 조항 .....	13



## Supplier Declaration on Business Ethics

협력업체의 기업 윤리 선언  
(이하 "협력업체 선언"이라고 한다.)

회사 이름  
주소  
국가 및 장소  
(이하 "협력업체")

**AT&S Austria Technologie & Systemtechnik Aktiengesellschaft, Fabriksgasse 13, 8700 Leoben 및 계열회사들**(이하 "AT&S"라고 한다.) 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향후 구매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 파트너 또는 제품공급자(이하 "협력 업체"라고 한다.)가 그들의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본 "협력 업체 선언"은 AT&S 의 협력업체들 또한 AT&S 가 협력업체에 요구하는 규정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따를 것임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AT&S는 협력업체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조 공정을 고수하도록 의무화 한다. 협력 업체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현지 법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한다. 또한 본 협력 업체 선언은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증된 표준에 따른다.

AT&S는 협력 업체들이 아래 기술한 대로 경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선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AT&S는 본 선언이 얼마나 잘 준수되는지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협력 업체의 임금, 근로 시간, 급여 명세서, 및 기타 근로자들에 대한 기록 및 활동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공지 하에 혹은 공지 하지 않고 협력 업체의 시설들을 방문 할 수 있다. 본 협력업체 선언을 위반할 경우 협력 업체로서의 제휴관계는 즉각적으로 해지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AT&S 협력 업체 선언은 전자 산업 시민 연대(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 EICC)가 확립한 기준에 토대를 두고 제정하였으며 해당 언어를 포함한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기준들과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국제 노동 기구)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SAI 사회적 책임 국제 기구), Ethical Trading Initiative (ETI 윤리적 무역 계획)와 같은 기구가 발표한 표준들을 참고하여 본 AT&S 협력업체 요구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추가 정보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선언의 마지막 부분에 일련의 세부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AT&S에 대한 협력업체의 확인과 동의, AT&S와의 지속적인 사업적 관계에 대한 고려, 그리고 AT&S에 대한 대표와 보증을 통해 협력업체와 그의 범국가적 관계회사들은 AT&S와 사업적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본 "사업 윤리에 대한 협력업체 선언"에 포함된 윤리적 표준과 다른 요구사항들을 준수합니다.**

## I. 노동 및 인권

협력 업체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지원하고 국제 사회의 이해 기준을 토대로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한다.

### A. 차별 정책 금지

협력 업체들은 인종, 유색인, 연령, 성별, 성적 취향, 민족, 장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국적, 혼인 여부에 근거해서 고용, 승진, 보상, 교육 훈련 기회, 직무 배치, 임금, 복지 후생, 근태, 및 계약 종료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협력 업체는 고용 전제 조건으로 임신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혹은 임신부를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규, 혹은 규정, 혹은 작업장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협력 업체는 근로자 혹은 잠재적 근로자들에게 차별 대우에 이용할 수도 있는 의료 진단을 요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해당 법규, 혹은 규정, 혹은 작업장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 B. 인도적 대우

협력 업체는 폭행이 없는 작업장을 조성해야 한다. 협력 업체는 성희롱, 성폭행, 체벌, 정신적 강요, 신체적 강요, 언어 폭력, 혹은 회사가 제공한 시설의 출입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규제를 포함하여 가혹한 혹은 비인도적으로 근로자를 대우해서는 안 된다.

### C. 비자발적 노동 및 인신 매매 방지

협력 업체는 인신 매매, 혹은 노예, 강제 노동, 담보 노동, 이주민 강제 노동, 혹은 수감자 노동의 형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협, 폭력, 강제, 납치, 사기, 혹은 착취목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모든 노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통보에 따라서 직장을 떠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여권 혹은 노동 허가증을 고용 조건의 일환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협력 업체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제 3 업체도 근로자를 보내고 받는 국가의 법과 본 선언 중, 둘 중 근로자 보호를 위한 더 엄격한 법을 준수하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협력 업체는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서를 해당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 조건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협력 업체가 근로자의 한달 예상 임금의 초과분에 대해서 모든 수수료와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에는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 절차, 혹은 배치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며 이 항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D. 아동 노동 금지

아동 노동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협력 업체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최소 고용 혹은 노동 연령 조건은 15세, 자국의 최소 고용 연령, 혹은 자국의 의무 교육 이수 연령 중 더 높은 연령이어야 한다. 본 선언은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Minimum Age Convention No. 138의 Article 6 과 일치하는 합법적 작업장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혹은 ILO Minimum Age Convention No. 138의 Article 7과 일치하는 가벼운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 하지 않는다. 18세 이하의 미성년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 혹은 안전을 위협받기 쉬운 노동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E. 미성년자 노동 방지

협력 업체는 법적 최소 노동 연령보다 많은 청소년의 경우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18세이하 미성년 근로자는 ILO Minimum Age Convention No. 138과 일치하는 건강, 안전 혹은 윤리를 위협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 F. 노동 시간

업계 전반의 과도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피로는 생산성 저하, 매출 증대 및 상해 및 질병 증가의 결과와 분명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노동시간은 현지법이 정한 최대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오버타임을 포함해서 주당 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상사태 혹은 특이 상황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는 최소 일주일에 한번은 쉬도록 한다.

### G. 임금 및 복리 후생

협력 업체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이 정한 최소 임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모든 복리 후생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정규 노동 시간에 대한 보상 외에도 근로자들은 해당 법규 및 규정이 정한 프리미엄 비율로 오버 타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협력 업체는 처벌 조치로서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협력 업체는 해당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휴가, 병가/출산 휴가 기간, 연차를 제공해야 한다. 협력 업체는 근로자에게 제때 지불하고 급여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 H. 단체 결사의 자유

협력 업체는 해당 법규 및 규정에 의해서 및 따라서 허용되는 대로 근로자 스스로 선택, 대표를 구하고 집단적으로 협상할 노동 조합과 자유롭게 연합, 형성 및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경해야 한다. 협력 업체는 노동 조합에 근거한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근로자가 노조원을 포기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혹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혹은 근로 시간 외에(혹은 협력 업체가 그러한 노조활동에 동의하는 근로시간 내에 혹은 해당 법규 혹은 규정이 정한 시간 내에) 노조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편파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협력 업체는 해당 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노조 설립, 기능 혹은 행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 I. 분쟁지역의 광물 구매 금지

AT&S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이있는 인식을 갖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강하게 실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콩고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생산되는 특정 광물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증가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T&S는 자사의 공급망이 콩고공화국 지역의 인권 침해를 심화시키지 않게 하며 콩고공화국 부근의 분쟁지역이나 비정부군사집단이 통제하며 불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루트에서 채굴된 분쟁광물(금, 탄탈, 텅스텐, 주석)을 AT&S와 AT&S의 제품 또는 AT&S의 고객사 제품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계약관계자와 외부제조사들을 포함한 협력 업체는 그러한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을 구매 하거나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분쟁광물로부터 공급망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AT&S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선언, 약속하고 AT&S의 요청에 대해 가능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II. 보건 및 안전

AT&S는 보건 및 안전 관리 관행을 사업의 모든 측면에 통합시킴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일관되게 성취하기 위해서 높은 사기를 유지하고 혁신적,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협력 업체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서 안전한 작업 조건과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 근로자들에게 동기 부여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작업 현장의 안전 및 보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직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OHSAS 18001 및 ILO 가이드라인과 같은 인증된 관리 시스템을 참조하여 본 선언의 기저를 마련하였으며 추가 정보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A. 직업 안전

협력 업체는 물리적 유해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물리적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작업장의 경우, 협력 업체는 신체적 보호 장치, 연동 장치 및 방벽과 같은 적절한 공학적 제어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공학적 제어 장치가 가능하지 않는 작업장은 협력 업체에 안전 작업 절차와 같은 적절한 행정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협력 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안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경영진이 근로자들의 우려를 적절히 처리할 때까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불안정한 작업 환경 조건들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B. 화학 약품 노출 방지

협력 업체는 근로자들이 유해한 화학적, 생물학적 및 물리적 매개체에 작업자들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 협력 업체는 화학적 유해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화학적 유해 물질을 제거 할 수 없는 곳은 공급 업체가 격리된 시스템과 환기 장치와 같은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장치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협력 업체는 안전 작업 절차와 같은 적절한 행정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협력 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 C. 비상 방지, 대비, 및 대응

협력 업체는 비상 상황과 사고를 예측, 확인 및 평가해야 하고 비상 대책 계획 및 대응 절차를 실행함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비상 계획과 대응 절차에는 리포트, 근로자 연락, 비상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훈련, 적절한 응급 처치 구급품, 화재 현장 목격 및 화재 진압 설비, 적절한 대피 시설 및 복구 계획을 포함한다.

### D. 직업적 안전보건 절차 및 시스템

협력 업체는 직업적 상해 및 질병을 관리, 추적, 및 보고하기 위해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와 시스템은 근로자들에게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상해 및 질병을 분류 및 기록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실행해서 원인을 제거하며 필요한 의료 치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작업장에 수월하게 복구하도록 해야 한다.

### **E.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

협력 업체는 노동력을 이용한 자재 취급, 중량물 취급, 장시간 서 있는 자세, 그리고 고도로 반복적인 작업 혹은 강제적인 조립 작업을 포함하여 신체적으로 힘든 노동에 노출된 근로자를 확인,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

### **F. 기계 보호 장치**

생산 및 다른 기계에 대해서 안전 유해 요인을 평가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힐 유해 요소가 있는 기계의 경우 물리적 가드, 연동 장치 및 방벽이 제공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정비 되어야 한다.

### **G. 위생, 음식, 및 편의 시설**

협력 업체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및 위생적인 음식 준비 및 보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협력 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 혹은 제 3자 기관은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 탈출, 목욕 및 샤워에 필요한 온수, 적절한 난방 및 통풍, 합리적인 개인 공간, 그리고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 **H.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협력 업체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 환경, 안전 및 보건 정보와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모국어로 안전 및 보건 정보 및 경고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협력 업체는 근로자들의 모국어로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 물질 및 독성 물질에 대한 MSDS를 게시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그러한 물질을 접촉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 해야 한다.

### **I.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위원회**

협력 업체는 지속적인 안전 보건 교육을 증진시키고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작업자들의 피드백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 III. 환경 영향

AT&S는 환경적 책임은 세계 제일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임을 인지한다.

제조 공정에서 지역 사회, 환경 및 자연 자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민간인들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ISO 14001, Eco Management 그리고 Audit System (EMAS) 와 같은 인증된 경영 시스템은 본 선언의 기저를 마련하는데 참조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추가 정보로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협력 업체는 디자인, 제조 공정 및 폐기물 배출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줄일 책임이 있다.

#### A. 유해 물질 관리 및 규제

협력 업체는 AT&S 웹 사이트 (<http://www.ats.net/suppliers/downloadcenter/>)에 발표된 때 환경 관련 물질 규제에 대하여 AT&S 가이드라인 최신 버전을 준수해야 하고 특정 물질 사용 혹은 취급을 금지 혹은 규제하는 해당 법규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안전한 취급, 이동, 보관, 리사이클, 재사용, 및 처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협력 업체는 환경에 배출될 경우 유해 요소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확인 및 관리 해야 하며 리사이클링과 처리에 관련된 해당 식별표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B. 고형 폐기 관리

협력 업체는 해당 법규 및 규정에 근거해서 생산에서 발생하는 무유해 고형 폐기물처리를 관리해야 한다.

#### C. 폐수 및 폭풍우 관리

협력 업체는 해당 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생산에서 나온 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모니터링, 관리 및 처리해야 한다. 협력 업체는 폭풍우로 인하여 시설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D. 대기 배출 관리

협력 업체는 배출 전에 해당 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에어로졸, 부식제, 입자성 미립 물질, 오존 결핍 화학물질, 및 발화 부산물들의 대기 방출에 대하여 분류, 모니터링, 관리 및 처리해야 한다.

#### E. 환경 허가 및 리포트

협력 업체는 의무화된 모든 환경허가증(예로 배출 모니터링) 및 등록증을 취득,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그러한 허가 사항 준수 및 리포트 요구 조건을 따라야 한다.

#### F. 오염 방지 및 자원 절약

협력 업체는 생산, 정비, 및 시설 프로세스 절약 수단을 실행하고 리사이클링, 재사용 혹은 대체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고형 폐기물, 폐수, 및 에너지와 관련하여 간접적 대기 방출도 포함한 대기방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 G. 제품 구성 물질 규제

협력 업체는 리사이클링 및 처리에 대한 식별 표시를 포함해서 특정 물질에 대한 금지 혹은 규제에 대한 법규, 규정,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IV. 윤리

협력 업체는 근로자, 협력 업체, 및 고객과 대응할 때 윤리 행동의 최고 표준을 따라야 한다.

### A. 청렴한 비즈니스 관행 & 이해 갈등

부패, 강청, 및 횡령은 어떤 형태로든 엄중히 금지한다. 협력 업체는 부패방지에 대한 국제 협정 및 해당 국가의 부패방지법 및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부패, 강청, 혹은 횡령 행위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해서는 안 된다. 협력 업체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편의를 얻기 위해서 뇌물이나 기타 수단들을 제안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협력 업체는 AT&S 직원들에게는 제안, 약속, 선물 또는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AT&S 직원의 식사초대에 대한 승낙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의 또는 미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integrity@ats.net)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 업체는 광고, 영업, 및 경쟁 시 정당한 비즈니스 표준을 따라야 한다. 모든 비즈니스 거래는 Supplier's business books and records에 반영된 대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실행해야 한다. 모니터링과 시행 절차들은 부패 방지 법규에 따라서 실행해야 한다. 협력 업체는 AT&S 직원과 관계되어 실제적, 잠재적 또는 예측 가능한 이해 갈등을 생성하는 고용, 재무 또는 다른 어떠한 관계도 가져서는 아니 된다. AT & S 직원의 개인적 이해가 AT & S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이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실제적, 잠재적 또는 예측가능한 이해의 갈등은 피하거나 또는 인지된 경우 공개하고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integrity@ats.net로 문의하시기 하여주시기 바란다.

### B. 뇌물

협력 업체의 직원들은 어떤 형태의 뇌물 및/혹은 부정하고 불법적인 이권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안, 요청, 혹은 수락해서도 안 되고 또한 이에 따른 합의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한 이권의 예로 리베이트, 선물 및 성과금, 접대비, 교통비 및 숙박비가 포함되며 또한 이에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및 사회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표준에 따라서 값어치가 미미한 소정의 선물들은 이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협력 업체의 모든 직원들은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직원들의 뇌물수수 행위를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어떤 형태의 뇌물 및/혹은 부정하고 불법적인 이권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요청하거나 수락하거나 합의를 해서도 아니 된다. 혹은 당사자, 당사자와 관련자 및 / 혹은 대리인의 편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C. 자본 시장 준수 : 내부자 거래

AT & S 는 상장 회사로, 적절한 조치에 의해 해당 법령에 따라 내부 규정 관련 또는 내부 정보 ("자료, 비공개 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인정하고, 협력 업체 또한 관련 법률 및 내부 규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AT&S 또는 AT&S 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나 비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협력 업체는 AT&S 관련 금융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 할 수 없으며, 특정주에 관련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 하는 것을 포함한다. 협력 업체는 업체의 직원들에게 해당정보를 알리고 올바르게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D. 인력 유인 금지

협력 업체는 AT&S의 인력을 유인 하는 것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AT&S인력을 빼간 협력 업체는 부당한 경쟁 규제법 위반으로 기존 계약 관계가 중단되는 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E. 정보 공개

협력 업체는 해당 법규 및 규정과 보편적인 산업 행위에 따라서 비즈니스 활동, 구조, 재정적 상황, 및 실행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알려야 한다.

### F. 내부 고발자 보호 및 익명 고발

협력 업체는 협력 업체와 내부 고발자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보호하고 신의를 가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을 확립해야 하며, 혹은 본 협력업체 선언을 위반하는 주문을 거절해야 한다. 협력 업체는 현지 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익명으로 작업장 불만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G. 지역 사회 활동 참여

협력 업체는 사회적 및 경제적 개발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한다.

### H. 지적 재산권 보호

협력 업체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기술 및 know-how 이동은 지적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 업체는 언제나 AT&S와 고객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AT&S 비밀 보장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 I. 모조품 방지

협력 업체는 모조품을 AT&S나 제3자에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상기 AT&S의 요구사항은 (i) AT&S에 대한 제품의 판매 또는 제안에 대한 증거의 근원을 제공해야 한다. (ii) AT&S에게 제공되며 판매된 제품에 관련한 모든 상품들이 모조품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iii) 협력 업체는 모조품의 사용과 판매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것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협력 업체는 모조품의 구입을 제안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AT&S에게 통보 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재수입되거나 도난 제품 또는 협력 업체가 여타의 방법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을 경우에도 통보 해야 한다.

### J. 사적 자유 보호

협력 업체는 협력 업체, 고객, 소비자 및 직원을 포함하여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협력 업체는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전송 및 공유할 때 사적 자유, 정보 보안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K. 보복 행위 방지

협력 업체는 근로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어떤 문제라도 제기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 V. 관리 시스템 준수

협력 업체는 자신의 작업 및 제품과 관련해서 본 선언, 관련 법규 및 규정과 고객의 요구 사항 준수를 확실히 하도록 고안된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확립해야 한다. 관련 운영 리스크를 식별하고 줄여야 한다; 지속적 개선을 조성해야 한다. ISO 14001, OHSAS 18001,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관리 시스템 준수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 A. 회사 정책

협력 업체는 법적 준수 및 지속적 개선에 대한 협력 업체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한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정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B. 매니지먼트 법적 책임 및 책임

협력 업체는 협력 업체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실행 및 주기적 상황 검토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책임자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 C.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 업체는 본 선언의 요구 조건을 포함하여 작업, 규정 및 고객의 요구 조건과 관련된 환경, 안전 및 보건, 비즈니스 윤리, 노동, 인권, 리스크에 대한 법적 준수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한다. 각 리스크의 관련 중요성을 결정한다. 법적 준수를 확실히 하고 확인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와 물리적 관리를 실행한다.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리스크 평가에는 창고 및 보관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 공장 및 시설은 설비, 분석실 및 테스트 영역, 화장실, 부엌, 카페테리아 및 근로자 숙소를 지원해야 한다.

### D. 실행 계획 및 조치 목적 수행

목적 대비 협력 업체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된 표준, 수행 목적,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

### E. 감사 및 평가

협력 업체는 정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통해서 협력 업체, 외주, 및 거래 업체들이 본 선언을 준수하며 해당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하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 F. 문서화 및 기록

협력 업체는 이 선언이 참조한 해당 법규와 규정, 추가적인 요구 조건을 확인, 모니터링 및 이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협력 업체는 해당 법규 및 규정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 유지 및 갱신해야 한다.

협력 업체는 사적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보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본 선언에 대한 법적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문서를 제정하고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 G. 교육 훈련

협력 업체는 정책과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감독자와 근로자들을 교육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립해야 한다.

### H. 커뮤니케이션

협력 업체는 근로자와 협력 업체 및 고객에게 실행, 관행, 및 기대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

#### **I. 근로자 피드백 및 참여**

협력 업체는 본 선언과 관련된 프로세스와 실행에 관한 직원들의 이해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얻고 또한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 **J. 개선책 프로세스**

협력 업체는 내부 혹은 외부 감사, 평가, 검사, 조사 혹은 검토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시기 적절하게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K. 협력 업체 책임감**

협력 업체는 외주들에게 본 선언의 요구 조건을 알리고 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한다.

## VI. 기타

### A. 협력 업체 방문

협력 업체는 AT&S의 직원 혹은 대리인이 협력 업체의 본 선언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통산 근무 시간 내에 방문하고자 할 때 이를 허용해야 한다.

### B. 행동 수칙 위반 책임

본 선언의 규정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 할 경우 협력 업체와 AT&S 간의 파트너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어떤 권한의 제한 없이, AT&S는 협력 업체가 본 선언을 어겼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 없이 협력 업체와의 제휴 관계를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 C. 외주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협력 업체는 해당 에이전트 혹은 외주 업체의 활동 혹은 태만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지라도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협력 업체의 외주업체들이 본 선언에 언급한 의무 사항을 어길 경우 협력 업체는 AT&S에 즉각적으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또한 위반한 외주업체와의 제휴 관계를 즉시 해지해야 한다.

### D. 유효기간

본 협력업체 선언의 유효 기간: 본 선언은 AT&S와 협력업체 계약상 제휴 관계가 해지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 E. 수정 및 추가

조항의 수정 또는 수정으로 인한 차이점은 AT&S와 협력업체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않는다.

### F. 분리 조항

본 협력업체 선언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무효 혹은 집행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한 무효 혹은 집행 불가의 경우 협력 업체는 무효한 조항의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AT&S와 상호 약속을 통해 조항을 보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T&S에 대한 협력업체의 확인과 동의, AT&S와의 지속적인 사업적 관계에 대한 고려, 그리고 AT&S에 대한 대표와 보증을 통해 협력업체와 그의 범국가적 관계회사들은 AT&S와 사업적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본 “사업 윤리에 대한 협력업체 선언”에 포함된 윤리적 표준과 다른 요구사항들을 따를 것입니다.

협력업체는 위 선언에 따라 협력업체에 의해 위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또는 이와 관련된 제 3자의 클레임에 대한 책임 및 비용(합당한 법률 및 변호사 비용 포함)을 AT & S 에게 보상 및 배상해야 합니다.

\_\_\_\_\_

장소, 날짜

\_\_\_\_\_

이름: \_\_\_\_\_

직위: \_\_\_\_\_

## References

###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www.quality.co.uk/emas.htm](http://www.quality.co.uk/emas.htm)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ttp://www.sec.gov/about/laws/wallstreetreform-cpa.pdf>

### **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

[www.eicc.info/eicc\\_code.shtml](http://www.eicc.info/eicc_code.shtml)

### **Conflict free metal sourcing**

[www.conflictreesmelter.org](http://www.conflictreesmelter.org)

### **Ethical Trading Initiative**

[www.ethicaltrade.org/](http://www.ethicaltrade.org/)

### **ILO Code of Practice in Safety and Health**

[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safework/cops/english/download/e000013.pdf](http://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safework/cops/english/download/e000013.pdf)

### **IL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norm/whatare/fundam/index.htm](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norm/whatare/fundam/index.htm)

### **ISO 14001**

[www.iso.org](http://www.iso.org)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www.nfpa.org/categoryList.asp?categoryID=143&URL=About%20NFPA](http://www.nfpa.org/categoryList.asp?categoryID=143&URL=About%20NFPA)

### **Confederation of Fire Protection Associations International**

<http://www.cfpa-i.org/index.html>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http://www.oecd.org/document/36/0,3746,en\\_2649\\_34889\\_44307940\\_1\\_1\\_1\\_1,00.html](http://www.oecd.org/document/36/0,3746,en_2649_34889_44307940_1_1_1_1,00.html)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ww.oecd.org](http://www.oecd.org)

### **OHSAS 18001**

[www.bsi-global.com/index.xalter](http://www.bsi-global.com/index.xalter)

### **SA 8000**

[www.cepaa.org/](http://www.cepaa.org/)

### **SAI**

[www.sa-intl.org](http://www.sa-intl.org)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www.unodc.org/unodc/en/corruption/index.html?ref=menu8](http://www.unodc.org/unodc/en/corruption/index.html?ref=menu8)

###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www.unglobalcompact.org](http://www.unglobalcompact.org)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ww.un.org/Overview/rights.html](http://www.un.org/Overview/rights.html)

### **UN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www.ohchr.org](http://www.ohchr.org)